

대한건축학회논문집규정 및 논문작성지침

※2026년 9월 11일에 개최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규정 제2조의1(저자 자격 확대), 제2조의2(제출비용 인상), 제2조의 2, 제5조, 제7조(급행 신설) 개정 건이 승인되어 전문을 게재합니다(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편집자 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규정

제정	1969년	3월	15일
개정	1974년	10월	14일
개정	1991년	2월	12일
개정	1994년	11월	8일
개정	1997년	1월	7일
개정	1998년	2월	3일
개정	1998년	6월	9일
개정	1999년	6월	11일
개정	2001년	3월	16일
개정	2002년	3월	15일
개정	2006년	11월	10일
개정	2008년	6월	13일
개정	2010년	10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개정	2014년	4월	11일
개정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6년	4월	15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9년	3월	8일
개정	2019년	6월	14일
개정	2020년	6월	12일
개정	2020년	10월	26일
개정	2023년	6월	9일
개정	2024년	6월	14일
개정	2025년	4월	11일
개정	2025년	6월	13일
개정	2026년	9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 및 심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투고자의 자격)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저자는 학생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단, 국외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회원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동저자로 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출비용)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150,000원(급행 300,000원), 투고료 100,000원(급행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 제출시 투고료를, 논문 게재시 게재료를 납부한다. 원고는 8쪽을 기준으로 12쪽 이하하여야 하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5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제3조(주저자, 교신저자의 표기)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주저자로 하며, 이메일 주소와 “Corresponding Author”임을 명기한 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제4조(연재회수의 제한)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제5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접수는 일반과 급행으로 구분한다.

②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편집위원회가 논문을 수령한 날짜로 한다.

③ 논문은 투고자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논문작성지침’에 맞게 작성하여 학회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본은 반드시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제출서는 인터넷 접수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1(논문의 구성 및 작성) 논문의 구성 및 작성에 관하여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의2(논문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논문편집위원회는 관련전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본 규정, 논문작성지침 및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논문집 발행과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제7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기일) ① 심사위원 위촉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는 관련전공분야의 2인이 심사 위촉을 받아 수행하며, 2인 중 1인의 게재불가 판정시 제3심사위원이 위촉을 받아 수행한다.

2. 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시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3.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할 수 있다.

② 심사기일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4일(급행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단, 심사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후 7일(급행 3일) 이내로 심사 가능여부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회신해야 하며 불가시, 즉시 예비심사위원으로 교체된다).

2.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교체된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수락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수정재심의 경우 심사위원은 재심의뢰 받은 후 14일(급행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일반논문은 심사위원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이 논문심사 기일을 3회 이상 어길 경우 상임심사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논문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논문의 판정) ①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내용의 수준과 연구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②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하며 다음에 준한다. 단 수정재심은 2회에 한한다.

1.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정게재 판정은 심사위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3. 수정재심 판정은 심사위원의 수정내용 반영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논문의 게재 및 게재불가) ① 논문은 다음과 같은 판정으로 게재 및 게재불가가 된다.

1.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중 1인의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제3심사위원을 위촉하고,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때에도 게재한다. 단, 게재불가 심사위원에게 2인의 게재가 심사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게재됨을 통보한다.
2.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3.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논문이의제기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4.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재투고가 가능하다.
5.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논문의 게재결정은 다음의 내용에 준한다.

1.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아래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가.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논문
 - 나.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논문. 단 이미 발표된 논문(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 다. 논문작성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
3. 논문의 게재일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동일저자의 논문은 한 호에 최대 2편까지 게재가 가능하다. 단, 주저자는 1편만 가능하다.

제10조(논문의 수정) ① 논문의 수정 및 답변서 제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정논문은 PDF파일로, 답변서는 논문집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답변서에 지연사유를 명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1년간 수정논문 미제출시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② 게재논문의 편집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책임 아래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상토론) ① 지상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은 대상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토론은 대상논문 저자의 토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단, 게재료는 없다.

② 토론의 채택 및 관리는 논문편집위원회가 한다.

③ 토론원고의 사용어 및 표기, 단위 및 기호, 그림 및 사진, 표, 주기방법, 참고문헌 기재방법 등은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단 토론 및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인쇄시 각각 2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토론의 제목은 ‘「(토론대상 논문제목)」에 대한 토론’이라고 첫 행에 기입하고 행을 바꾸어 괄호 속에 ‘논문제목, 저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권 제○○호, ○○○○년 ○○월호 게재’라고 기입한다.

제12조(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매월 30일에 발행한다.

제13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① 저작권은 논문제출시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작성, 동의함으로써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출판 전 형태의 논문)에 대한 개정, 개선, 적용, 파생연구, 구두발표 등 권리를 유지하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의 개인 웹사이트 및 블로그, 소속 기관의 리포지토리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24년 6월 14일에 개정된 규정의 제2조의2, 제7조, 제9조는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2025년 4월 11일에 개정된 규정의 제2조의2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2026년 9월 11일에 개정된 규정의 제2조의1, 제2조의2, 제5조, 제7조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